

2021 - 68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(정비구역등의 해제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4일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변경(해제)

구분	구역명	위치	사업방식	면적(㎡)	정비구역지정일 (고시번호)
기정	정릉동 50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성북구 정릉동 506-50번지 일대	주택재건축	56,530	2008.10.16. (서고시 제2008-364호)
변경	해제				

- ☐ 정비계획 변경(환원 및 폐지)
☐ 용도지역(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)

구분	면적(㎡)			비고
	기정	증감	변경	
계	56,530.0	-	56,53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) 56,530.0	56,530.0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56,530.0	감) 56,530.0	-	

- ☐ 토지이용계획(폐지: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)

결정 구분	구분		면적(㎡)	비율(%)	비고
기정	합계		56,530.0	100.0	
	정비기반 시설	소계	6,850.0	12.1	
		도로	5,250.0	9.3	
		어린이 공원	1,600.0	2.8	
	택지	소계	49,680.0	87.9	
		공동주택용지	49,350.0	87.3	
		보육시설용지	330.0	0.6	
변경	폐지(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)				

○ 건축시설계획(폐지)

결정구분	구분		위 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수(층)
	명칭	면적(㎡)					
기정	택지1	49,350	성북구 정릉동 506-50번지 일원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40% 이하	166%이하 (임대주택 제외)	최고 15층 평균 8층 이하 (임대주택 포함)
	택지2	330	성북구 정릉동 산87-205번지 일원	보육시설 (어린이집)	관계법령에 따름		
변경	폐지						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(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)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.

2. 지형도면: 따로 붙임

3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(☎ 02-2133-7214)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(☎ 02-2241-2915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불 입

- 위치도(성북구 정릉동 506-50번지 일대)



- 정비구역 결정도(해제)

